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심장질환 ⑩

심장마비

-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 1996. 7. 19. 선고 95구 1468 판결
-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
-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76호 판결

판결요지

사납금 이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소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위 망인의 근무 형태, 1994. 6. 당시의 근무일과 휴무일 등에 비추어 통상업무 이외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으로 업무의 재해이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5, 을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박병천은 1992. 5.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보문택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4. 6. 23. 02:20경 운전을 마치고 위 회사 건너편에 있는 부여식당에서 동료근로자들과 04:30경까지 술을

